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
법률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(법률 제18231호, 2021. 6. 8. 공포, 2021. 12. 9. 시행)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·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(안 제2조)

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·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·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유·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

나. 과태료 부과기준(안 제3조 및 별표 1)

법 제32조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)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1.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
2.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
3.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(이하 “매입재산”이라 한다)의 처분 후 사용용도
4. 매입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
5. 매입재산의 현황 및 상태

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가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
다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호	500만원
나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 사업을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2호	500만원
다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3호	500만원
라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4호	500만원
마.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5호	500만원
바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6호	500만원

사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32조 제2항제1호	300만원
아. 법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7호	500만원
자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32조 제2항제2호	300만원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2 - 5493